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1. 4.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여성가족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여성가족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달서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차 심의보완 요청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친화 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아동의 권리(생존권, 빌랄권, 참여권, 보호권)를 추가 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차별의 구체적인 요소 및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해 명시를 하였습니다.
- 안 제10조에서는 아동영향평가실시 의무, 근거, 실시정책과 대상을 구체화 하였고
- 안 제11조에서는 아동권리대변인의 구성과 역할 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으며
- 안 제18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정기회의 조항을 삽입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1. 3. 11일부터 3.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1. 4.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를 구체적 명시 및 추가하고자 하오니,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82/046
----------	----------

제출년월일: 2021. 4. 8.
제출자: 달서구청장
(여성가족과장)

1. 개정이유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달서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차 심의보완 요청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친화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의 권리(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추가(안 제2조)
- 나. 차별의 구체적인 요소 및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해 명시(안 제5조)
- 다. 아동영향평가실시 의무, 근거, 실시정책과 대상을 구체화(안 제10조)
- 라. 아동권리대변인의 구성과 역할 책무에 대해 구체적 명시(안 제11조)
- 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정기회의 조항 삽입(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3. 11. ~3. 3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없음

3) 비용추계서: 비대상

4) 부패영향평가: 의견 1건(위원의 제척 및 회피 추가 제안: 불수용)

개선의견 제안	개선의견 반영결과	
	조례안	검토 결과
제11조(아동권리대변인) ①~③ (개정안과 동일) ④ 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 며, 제척 · 회피 등은 제19조, 해 촉은 제20조를 준용한다 ⑤ (개정안과 동일)	제19조(위원의 제척 · 회피 등) ①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 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 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 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지 않은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 우 3.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데 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권리대변인 3명이 아동친화 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가입 되어있어 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0 조의 규정에 해당됨.

5)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1건(제5조제1호에 성별 추가 제안 수용)

개선의견 제안	개선의견 반영결과	
	조례안	검토 결과
제5조(기본원칙 등) 1. 모든 아동은 나이, 종교, 학력, 신체조건, 성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2,3,4호 생략	제5조(기본원칙 등) 1. 모든 아동은 나이, 종교,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2,3,4호 생략	개선의견을 반영한 “모든 아동은 나이, 종교, 학력, 신체조건, 성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로 성별 추가함.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써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 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선적”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1. 모든 아동은 나이, 종교, 학력, 신체조건, 성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제8조 중 “정책과”를 “모든 정책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 ④ 아동영향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대변인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를 “아동권리대변인(이하 “대변인”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③ 대변인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권리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변인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5호 중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아동영향평가”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u><신 설></u>	1. · 2. (현행과 같음) 3. “아동의 권리”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써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

	<u>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u>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등) ----- ----- ----- -----.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나이, 종교, 학력, 신체조건, 성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 ----- --- <u>최우선적</u>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8조(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 참여보장) ----- ----- <u>모든 정책</u> 과 ----- ----- -----.
제10조(아동영향평가 실시) 구청장은 아동과 관련된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주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④ 아동영향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아동권리대변인) ① -----
----- 아동권리대변인(이하 “대변인”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 친화와 관련된 사항

③ 대변인은 3명 이내로 구성하

<신 설>

제11조(아동권리대변인)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아동권리대변인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권리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에 의견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변인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심의한다.

1. ~ 4. (생략)

5.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아동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④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 아동영향평가-----

6. (현행과 같음)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 ① ~ ② 생략
-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 11.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 ⑤ 생략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⑦ 생략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 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